

(제6-7-3-4호)

감사.감사위원회 위원 중도 퇴임

1. 퇴임감사 (감사위원) 내역	구 분		감사위원회 위원
	성 명		채수일
	임기	시작일	2022.4.1
		만료일	2025.3.31
2. 퇴임사유			중도사임
3. 퇴임일자			2023.3.28
4. 퇴임 후 감사(감사 위원)현황	감사수(명)	상근	-
		비상근	-
	감사위원 수(명)	사외이사	2
		비사외이사	-
5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		-

<기재상의 주의>

주1)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이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퇴임(중도사임 또는 해임 등)한 때 신고한다. 다만, 임기만료 전에 동일임원으로 재 선임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
주2) “구분”은 상근감사, 비상근감사, 감사위원회위원 등 해당사항을 기재한다.

주3) 상기 기재사항 외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